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

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
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현행 조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조경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면
서도, 부칙을 통해 그 적용 범위를 ‘시설현대화 사업기간 중’
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

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
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특성상 물류 공간 확보와 운영 효율성

제고를 위해서는 조경 의무 제외의 상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184호 서울특별시 건축
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함으로써, 농수산물 도매시
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 적용을 상시화하고 안정적인 물류 기
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
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